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6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이해식 · 허 영 · 박용갑
박상혁 · 염태영 · 서영석
윤준병 · 한민수 · 차지호
위성곤 · 김영진 · 서영교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방 및”을 “예방, 신속한 피해 복구·대응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장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을 “인력의 양성 및 교육”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연 1회 이상”을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5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u>예방</u>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 <u>예방, 신속한 피해 복구·대응</u> 및----- ----- -----.
<u><신 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장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u>교육·홍보</u> 에 관한 사항	3. ----- ----- <u>인력의 양성 및 교육</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연 1회 이상</u>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u>검토하여</u>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u><신설></u>	<u>경적 특성 및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매 분기 1회 이상</u>----- ----. ----- -----<u>검토하고</u> <u>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 ① <u>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u>
--	--

	<u>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u> <u>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	--